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5
----------	-----

제출년월일 : 1994.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 하고자 함

□ 주요 골자

- 행정사무의 기능을 재분배 하기위하여 권한위임조례를 일제 정비

— 총 37개사무 (신설19, 개정 6, 폐지 12)

- 신설되는 주요사무

— 택시의공급기준과 그 작성기준에관한 사항 (공급기준책정)

— 준도시 지역의 개발계획 승인

— 지하수 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근거 법령

- 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 ----- 따로붙임
- 국토이용관리법제14조의2제1항제2호 ----- 따로붙임
- 지하수법제11조 ----- 따로붙임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3조 ----- 따로붙임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가정복지과 소관사무 제25호내지 제28호는 이를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가정복지과	2	○ 시설요지, 시설화장장, 시설납골당설치허가 (요지구획이 2개 시군에 걸치는 묘지 제외)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제8조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공업과소관 사무제11호는 이를 삭제하고 제7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공업과	7	○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고압가스제조(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 나.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제조(변경) 허가 다. 사업개시, 휴지, 재개, 폐지신고 라. 법인의 대표자 변경신고 마.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 및 위해예방조치 명령 바. 안전관리자 채용, 해임 또는 퇴직신고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동법제5조제1항 동법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동법제24조 동법제15조

<p>공 업 과</p>	<p>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변경) 허가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변경)허가 다. 가스용품 제조사업(변경) 허가 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시공자 등록 마.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공급규정 (변경) 승인 바. 법인의 대표자 변경 신고 사. 사업개시, 휴지, 재개, 폐지신고 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 신고 자.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 및 위해예방 조치 명령 등 차. 안전관리자 채용, 해임, 퇴직신고 카. 허가의 취소 등 타. 과태료 부과징수 파. 조정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법제9조 동법제43조 동법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동법제3조 동법제3조 동법제15조제6항 동법제26조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동법제6조 동법제7조 동법제32조 동법제14조 동법제8조 동법제48조 동법제34조
--------------	--	--

공 업 과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사용 시설에 관한 다음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시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시공자 등록 나. 가스사용시설의 위해예방 조치등 업무 다. 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의 채용, 해임, 퇴직신고 라. 도시가스 사용자 및 "가"항, "나"항에 대한 행정조치 또는 과태료부과, 징수 	<p>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4항</p> <p>동법제28조</p> <p>동법제29조</p> <p>동법제48조내지 제54조</p>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에너지관리자 채용, 해임, 퇴직신고 나.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기한 연기 및 필요한 조치명령 마. 검사대상기기의 사용 정지 명령 바. 에너지관리자 및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 해임, 퇴직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p>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3조제2항</p> <p>동법제48조제5항</p> <p>동법제48조제6항</p> <p>동법제49조제4항 또는 제5항</p> <p>동법제50조제1항 또는제2항</p> <p>동법제92조</p>

(별표1)권한위임 사무중 농산과소관 제11호 다음에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야 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농 산 과	12	양곡매매업의 신고 등(신고, 변경, 폐지, 휴업)	양곡관리법제18조 제1항
	1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매매업을 영위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징수	동법 제36조 제1항 1호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관광과 소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다음에 제6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관광과	4	○ 관광지등의 입장료, 관람료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및 금액의 결정과 징수	관광진흥법 제35조제2항
	6	○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한 보고 검사	관광진흥법 제51조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교통행정과 소관 제14호 다음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교통행정과	15	○ 택시의 공급기준과 그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 (공급기준 책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지역계획과 소관사무 제1호 내지 제7호는 이를 삭제하고 제8호 내지 제41호는 이를 제1호 내지 제33호 로 하며 제23호 다음에 제34호 내지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지역계획과	34	○ 용도지역을 표시한 지형도면의 작성	국토이용관리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제8조
	35	○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 승인	동법제14조의2 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제11조제1항
	36	○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토지사용 권고	동법제21조
	37	○ 국토이용관리법령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동법제26조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치수과 소관 제86호 다음에 제87호 내지 제9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기 법 령
치 수 과	87	○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처리	지하수법제7조 동법시행령제6조
	88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시정명령등	동법제8조 동법제20조
	89	○ 지하수개발·이용지역의 원상복구 명령	동법제9조
	90	○ 지하수보전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동법제11조 동법시행령제9조 제1항
	91	○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단 중앙행정기관에 보고는 제외)	동법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제13조
	92	○ 수질검사 등	동법제16조 동법시행령제14조
	93	○ 지하수개발·이용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	동법제17조
	94	○ 타인토지에의 출입및 일시사용, 지장물제거 관련 허가 등	동법제18조
	95	○ 과태료 부과 징수	동법제24조 동법시행령제17조

(별표4) 민간위탁 사무중 대상실과 우측에 일련번호 난을 설치하고 보건과 소관을 제1호로하고 청소년과 소관을 제2호로하며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하여 산림녹지과 소관을 제3호로 하며 상정과를 삭제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를 지역경제과 소관제4호로 하며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에관한 사무를 공업과 소관제5호로하고 제5호다음에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법령
사회과	6	○ 장애인재활에관한 다음사무 가 장애인체육대회 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다 장애인의날기념 재활대회 라 재가장애인 상담지도 등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재활협회충북 지부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 제30조제1항 동법 제43조 동법 제20조
	7	○ 장애인 보장구 무료지원사업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재활협회충북 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중소기업과	8	○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추진사무	청주상공 회의소	중소기업진흥법 제34조
	9	○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무	대한무역진흥 공사 충북 무역관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